

디폴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설명서

이 설명서는 당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. 실제 계약은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이 적용되며 해당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”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 및 “퇴직연금감독규정”, “수신거래기본약관” 및 “거치식예수금약관”을 적용됩니다. 해당 상품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0조에 따라 예탁받는 상품입니다.

1 상품 개요 및 상품의 특성

- 디폴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예금 상품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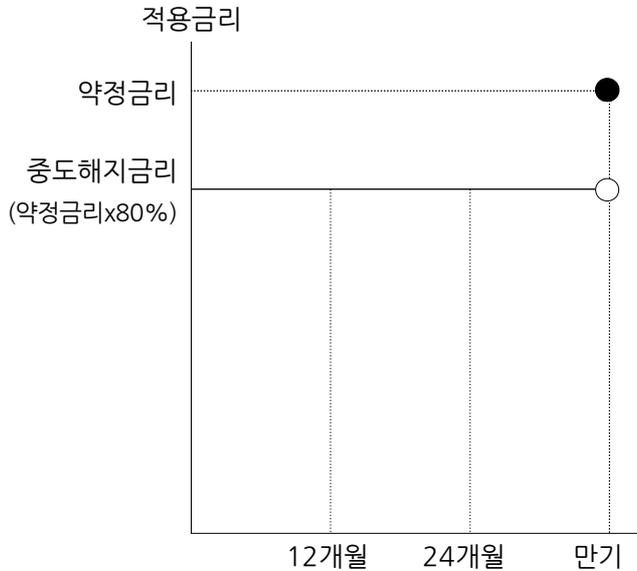
구분	세부내용
취급대상	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지시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급
계약기간	36개월
가입금액	- 최저 : 1원 이상 / 최대 : 제한없음
지급제한	- 계좌에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이 있을 경우 원리금 지급 제한 -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양수도, 질권설정, 담보제공, 지급정지, 상계 등 불가

□ 일반중도해지이율

- 만기일 전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 대신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.

• 중도해지금리 = 약정금리 X 80%

※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(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)되며, 일반중도해지이율이 0.2% 미만 시 0.2% 적용



2 이자 산정 및 지급

□ 금리 현황

적용금리	가입(재예치) 당일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
이자지급	만기 시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지급

□ 이자 산정 방식

이자수령액 = 원금 X 약정금리 X 예치일수 ÷ 365
(원미만 절사)

※ 중도해지시의 이자계산은 아래 항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상기 중도해지이율은 시행일(2025년 6월 2일) 이후 신규 및 재예치 예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
■ 본 상품설명서는 2025년 9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상품설명서입니다.

□ 특별중도해지이율

-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(또는 출금)하는 경우 예치일 당시의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. 단,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일(재예치일) 당시의 약정이율 적용합니다.
 1.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 2.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 3. 퇴직연금의 특별중도해지사유
 -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
 -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
 -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
 - 수탁자의 사임
 4.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전환 및 급여이전(계약이전)
 5.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
 6. 퇴직연금 계약에 의한 운용·자산관리 수수료의 지급
 7.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 질병,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요양 및 가입자의 해외이주(개인형IRP에 한함)
 8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제13조의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
- 예치일부터 인출일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예치일 당시 고시된 약정이율
 1. 경과기간 24개월 미만 : 12개월제 약정이율
 2. 경과기간 24개월 이상 : 24개월제 약정이율

□ 분할해지

- 만기해지 포함 3회 이내 가능(단,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(DC)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 가능하며, 자동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)

-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분할해지하는 경우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
 1.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
 2.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
 3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제13조의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

□ 만기처리방법

- 예금의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
- 다만,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 시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재예치되며,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

3 | 계약의 해지 및 위법계약해지권

- 계약의 해지 : 이 예금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문을 통하여 매도 지시된 경우에 한해 일괄 해지 가능합니다.
- 위법계약해지권 :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.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

4 | 예금자 보호 여부

<p>해당</p> 	<p>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“1억원까지”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</p>
---	--

5

기타 유의사항

- 만기 전에 해지할 경우 약정금리 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.
- 본 상품은 예치기간 및 예치금액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, 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이 예금은 세금우대,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,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.
- 이 예금은 양수도, 질권설정 및 담보제공, 지급정지, 상계 등이 불가능합니다.
- 이 예금은 추가 입금 시마다 별도의 예금 계좌가 생성되며, 해당시점의 고시된 이율이 적용됩니다.

6

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

- 상품 가입 후 고객의 피해 발생 또는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(☎1544-8333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ksfc.co.kr) '금융소비자정보포털'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. 또한, 당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■ 이 설명서는 당사 퇴직연금정기예금 특약 및 수신거래기본약관, 거치식예수금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유의사항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자료입니다. 구체적인 거래나 정보에 대하여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 금융 상품은 한국증권금융 자본시장금융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.

■ 계약서류(약관, 상품설명서 등)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당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